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합감사 결과

가. 감사개요

▣ **감사기간** : 2022. 9. 19. ~ 9. 30. (10일간)

▣ **감 사 반** : 감사담당관 등 8명 (실지감사)

▣ 감사내용

-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한 주요사업 및 기관운영 업무 전반

나. 감사결과

▣ 총괄표

(단위: 건, 명, 천원)

합계			문책 (인원)	시정 (금액)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			수사 요청	현지 조치
건수	금액	인원						계	일반	인사	모범 사례		
23	11,136	4		3 (11,136)	10 (4)			10	10				

※ **첨부서류 :**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▣ 세부내역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ㅇ **공모사업 지원심의제 운영 부적정** - 문화예술진흥 등 사업을 수행할 단체(개인)를 공모로 선정하면서 ▲심의 단계별 대상자나 합격(통과) 점수 하한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대상자 제각각 결정 ▲전담심의위원 섭외순위가 무작위 추첨방식이 아닌 협의 결정되어 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 저해 우려 ▲심의위원 반복 위촉을 제한하는 심의총량제(누계 10회 초과 시 1년간 안식년)의 실효성 부족으로 개선 필요 등 지원심의제 운영 부적정	ㅇ **주의·통보** - 지원심의제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 - 심의 단계별 대상자 선정 범위와 합격 점수 하한선의 객관적 기준 설정, 심의위원 반복 제한 기준 설정 등 지원심의제 개선방안 강구
2	ㅇ **부정수급 보조금 등 환수 업무 부적정** -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▲조사·수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조사업의 교부 결정 취소를 하지 않거나(12건) ▲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통지 시 이자 반환을 통지하지 않거나(8건) 납부 기한 미설정(11건) ▲부정수급 보조금 납부 기한을 도과한 미납 건(11건)에 대해 독촉·강제징수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업무처리 부적정	ㅇ **주의·통보** - 보조금 환수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 - 조사·수사 등 결과 부정수급 확인되어 반환을 명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보조금과 이자의 환수방안 강구
3	ㅇ **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** -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▲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장기 미정산이 반복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집행상황 점검 없이 보조금을 일시에 교부(38건) ▲전년도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차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(2건) 등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	ㅇ **통보** - 자체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분할교부 취지에 따라 개정, 장기 미정산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강구
4	ㅇ **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 사업 사후관리 부적정** - 문학작품 집필을 지원하면서 ▲작품집을 발간하지 않고 작고한 작가를 발간의무 미이행 작가로 관리하거나(3건), 작품집이 발간되지 않은 작가를 발간의무 이행 작가로 처리하는(1건) 등 발간의무 이행관리 미흡 ▲성과보고 미이행자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발간의무 미이행 작가(2013~2020년 총 544명 중 60명)에 대해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명단을 공유하여 타 기관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미실시 ▲출판계약 등의 문제로 작품집을 발간하지 못한 작가에 대한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	ㅇ **주의·통보** - 문학창작기금 지원 사업 업무 철저 기관주의 - 장기간 작품집 발간의무 미이행 작가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 강구
5	ㅇ **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자격 및 심사기준 개선 필요** -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▲문화예술 비전공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인정 기준(교육 시수에 대한 기준 없이 '교육과정 3개월 이상 이수' 제시) 불명확 ▲서류	ㅇ **통보** - 연수단원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, 선발 평가표를 합리적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	심사 시 '전공 부합 정도'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부재로 심사위원마다 주관적으로 평가 ▲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다르게 가점 부여 등 주관기관에 제시하는 연수단원 선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개선 필요	으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
6	○ **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시스템 개선 필요** - 문화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을 발급·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면서 ▲발급 담당자(주민센터 직원 등) 변경 시 비인가자에 의해 수급자 개인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자동 변경(폐기)하는 등 시스템 권한 관리 기능 개선 필요 ▲발급 담당자가 시스템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고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예외 처리로 직접 입력하는 경우(주민등록번호 비노출 대상자 등) 부적격자에게 발급되는 사례가 있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자격 검증 절차 개선 필요	○ **통보** -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권한 관리기능과 발급 자격 검증 절차 개선방안 강구
7	○ **상가시설 임대차계약 등 계약업무처리 부적정** -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▲고정자산(상가시설)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 예정 시설의 감정가격 대신 인근 유사시설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, 경쟁입찰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 ▲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공고 미실시(53건) ▲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(19건) 등 계약업무 부적정	○ **주의** - 계약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
8	○ **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** 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(5건)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6,466,080원 지급 부적정	○ **시정** - 면세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6,466,080원 환수 시정 조치
9	○ **정책연구용역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** -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▲최종 결과보고서 납품 이전에 완수 확인 후 대가 지급(21건) ▲연구기관 수행능력 등 적정성 심의 없이 수의계약 체결(48건) ▲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미공개(62건) 등 연구용역 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	○ **주의·통보** - 정책연구용역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, 관련자 1명 개인주의 -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 연구자 선정에 대한 심의 제도화 방안 마련
10	○ **임직원 사택 운영 부적정** - 나주 혁신도시에 임직원용 사택(8세대)을 운영하면서 ▲국토교통부 기준과 다르게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처장에게도 전용 사택을 지원하고 ▲입주·퇴거 시 사택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없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(104,600원)을 위원회가 부담하는 등 사택 운영 부적정	○ **통보** -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전용 사택 미제공, 입주·퇴거 시 사택 시설과 비품의 관리상태 점검 기준 마련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1	○ **직원 교육훈련제도 운영 부적정** - 사무처 직원 대상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▲대학원 위탁교육 훈련기관을 무단 변경(1명, 지원금 625,000원)하거나 임금피크제 전환 예정자(1명)에게 교육비 지원, 교육 직후 퇴직(1명, 지원금 3,984,000원) 또는 졸업 증빙 미제출(5명) 등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환수조치 등 미실시 ▲국내 문화체험 연수에 직원과 동행한 가족 등이 사용한 숙박비와 식비 등 연수 취지와 무관한 비용(1,112,450원)을 교육비로 인정하는 등 교육훈련제도운영 부적정	○ **시정·통보** - 의무 미이행자 2명에게 지원된 금액 4,296,500원 환수 시정 조치 - 교육 결과보고 미이행 직원으로부터 증빙 제출 등 방안 마련, 국내 문화체험연수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
12	○ **임직원 외부활동 복무관리 부적정** - 자체 「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」과 다르게 ▲외부활동을 하면서 미신고(4명) ▲기관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외부활동을 하면서 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복무처리(892건) ▲사례금을 받고도 출장으로 복무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지급(6명, 373,600원)하는 등 외부활동 복무관리 부적정	○ **시정·주의** -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 373,600원 환수 시정 조치 - 외부활동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, 관련자 3명 개인주의
13	○ **자체 성과급 운영 부적정** - 2017년 성과연봉제 폐지 후 2018년부터 ▲임직원의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할 내부평가급을 기준월봉 기준 정률 지급 ▲「보수규정」 등에 지급근거가 없는 연말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성과급 제도운영 부적정	○ **주의** - 자체 성과급 운영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
14	○ **고정자산 사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** - 위원회 고정자산을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외부에 임대하면서 ▲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편의시설에 사용료 미부과 ▲노동조합이 미납한 전기·수도료(총 7개월분 2,100,000원) 미징수 등 고정자산 사용허가 부적정	○ **주의·통보** - 고정자산 사용허가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 - 미납된 전기·수도료를 납부받는 방안 강구